**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15.12.18] [환경부고시 제2015-231호, 2015.12.18, 일부개정]

환경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유효성분"이란 제품 내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말한다.

4.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1차 포장"이란 제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6.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차 포장 이외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제3조**(위해우려제품)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조사)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의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안전·표시기준**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 등) ①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은 법 제33조에 따른 제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유해물질 기준은 품목별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형, 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내 산(pH)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해우려제품의 물질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표 3에 수록되지 않은 시험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제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법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제6항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동일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해당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통관 또는 제품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성적서 등에 포함되는 생산·수입자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종전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험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제7조**(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위해우려제품 중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생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④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인 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별도의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표시사항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우려제품 표시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2015-231호,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관리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쌍꺼풀용 접착제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 중 강도시험 관련 사항 및 제8조는 고시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